

교직원보수규정(3-3-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의(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직원 보수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 :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봉급, 기타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
2. 봉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포함한 금액
3. 봉급일액 : 월봉급액을 30일로 제한 금액
4. 초임금 : 임용할 때 최초로 확정된 급호봉의 봉급액
5. 봉급일할 계산 : 그 달의 봉급액을 월의 대소에 불구하고 30분의 1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제2장 봉 급

제4조(직급 및 호봉) 교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각각 당해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호봉은 사립학교 연금공단 기준에 의한다.

제5조(총장 및 교직원) 전조가 정하는 교직원의 각 직급 및 호봉에 의한 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비정규 일반직원) ① 조건부 혹은 임시직원(이하 “수습직원”)의 보수는 매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 고용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초임금 및 승급) 교직원의 초임금 및 승급은 각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8조(전임시의 초임금) ① 동일한 직종 및 직급으로 전임할 경우의 초임금은 전임전의 호봉으로 한다.

② 직종을 달리하는 전임에 있어서는 경력 등을 참작하여 총장이 초임금을 정한다.

제9조(승진시의 초임급) 승진시의 초임급은 승진전의 봉급(조건부 또는 수습기간으로서의 봉급은 제외)이 해당직급의 봉급과 같거나 초과되는 호봉을 초임급으로 한다.

제10조(복직자의 초임급) 퇴직 또는 휴직한 교직원이 복직할 경우의 초임급은 퇴직 또는 휴직 당시의 직급 호봉(조건부 또는 수습기간으로서의 기간의 호봉은 제외)을 초임급으로 한다.

제3장 보수지급

제11조(보수지급일) ①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을 12등분하여 매월 말일(末日)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 조건부, 촉탁, 수습사원, 고용원의 보수는 전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은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임용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봉급일할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제13조(봉급의 감액) 복무규정이 규정하는 연가, 공가, 병가 및 특별휴가를 제외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4조(잔무 처리기간 중의 보수) 해직된 교직원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한 집무를 계속할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겸직보수) 교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 보직의 경우도 이와 같다.

제16조(휴직기간중의 보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교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 질환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제17조(연봉제) 전 교직원에 대하여 2000년 3월 1일부로 연봉을 책정하여 보수를 지급하

며, 다음 수당에 대하여는 계약당시 연봉금액에 산입한다.(개정 2016. 6. 30.)

1. 기본급
2. 성과급
3. <삭 제>
4. 급양비
5. <삭 제>
6. <삭 제>
7. 연구비 및 연구보조비
8. <삭 제>

제17조의2(연봉의 구성) ① 교직원의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성한다.

- ② 기본급은 개인별 직·호봉에 의해 산정한다.
- ③ 성과급은 직전학년도 업적 및 직무평가에 의해 산정한다.
- ④ 매년 3월 1일 기준 교원은 만60세 이상, 직원은 만55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인상액의 경우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기타수당)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개정 2016. 6. 30.)

1. 보직수당. 단 2개 이상 보직을 수행할 경우 1개 보직에 한하여 겸직수당 지급
2. 초과강의료
3. 자녀학비 보조수당
4. <삭 제>
5. 논문게재보조비
6. 학회참석지원비
7. 명절수당.
8. 의학수당
9. 면허(자격)수당
10. 직급수당
11. 당직수당
12. 연가보상비

제4장 퇴직금 등

제19조(퇴직금 계산 및 지급) 교직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직무 중 사상자에 대한 보상) 교직원이 직무수행을 하다가 사망, 상병 또한 이병한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중 교직원의 직무 중 사상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법정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4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제4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